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66

발의연월일: 2024. 7. 30.

발 의 자:진성준・이기헌・송재봉

민병덕 · 정성호 · 문진석

박상혁 · 이학영 · 위성곤

정준호 · 이원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현행법이 제정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됨. 그 결과로 민간 장기요양 기관의 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임.

특히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입장에서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농산·어촌 지역은 설치를 기피하게 되어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권위는 2022년 4월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받은 기관으로서"를 "받고"로, "기관을"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공공 장기요양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장기 요양기관
- 나. 민간 장기요양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 이외의 기관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제4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를 "공단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사항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1조의2(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은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 장기요양기관은 제6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농산어촌지역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벽지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 | 4 | |
| 에 따른 지정을 <u>받은 기관으</u> | <u>받고</u> | |
| <u>로서</u>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 | <u>다음 각</u> | |
| 는 <u>기관을</u> 말한다. |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 |
| | | |
| <u><신 설></u> | 가. 공공 장기요양기관: 지방 | |
| | <u> 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u> | |
| | 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 | |
| | 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 |
| | 한다)이 운영하는 장기요 | |
| | <u>양기관</u> | |
| <u><신 설></u> | 나. 민간 장기요양기관: 지방 | |
| | <u> 자치단체 또는 공단 이외</u> | |
| | 의 기관이 운영하는 장기 | |
| | 요양기관 |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 |
| 책무 등) ① (생 략) | 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 |
|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 | 2 | |
| 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 | | |

는 <u>「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u> <u>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u> <u>이라 한다)에</u> 대하여 이에 소 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 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후단 신설>

1. ~ 3. (생 략) <u><신 설></u>

 4. (생 략)

 ② (생 략)

 <신 설>

| <u>강단에</u> |
|---|
| <u>.</u> |
|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
| |
| |
| |
| |
| |
| 이 경우 제4호의 사항은 |
|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 |
| 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 |
| 여야 한다. |
| 1. ~ 3. (현행과 같음) |
| 4.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 |
| 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
| 계획 |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 _ · · · · · · · · · · · · · · · · · · · |
| 제31조의2(공공 장기요양기관의 |
|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 또 |
| 는 공단은 공공 장기요양기관 |
| 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
| 경우 공공 장기요양기관은 제6 |
| |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저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 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1. (생략) <u><신 설></u>

<u>2.</u> ∼ <u>4.</u> (생 략)

| | 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 | 라 |
|---|-----------------------------------|----------|
| | 농산어촌지역 및 보건복지부 | - 렁 |
| | 으로 정하는 도서 • 벽지지역 | 에 |
| |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u>.</u> |
|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 장기 | 요 |
| | 양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 | .한 |
| |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1 | 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 | - え |
| | 및 기능) | |
| | | |
| | | |
| | <u>.</u> | |
| | 1. (현행과 같음) | |
| | 2.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 공 |
| | 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 | |
| | <u>3.</u> ~ <u>5.</u> (현행 제2호부터 > | · 세4 |
| | | |

호까지와 같음)